

제 24 호
1982. 8. 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인·심·배
 편집 : 공보관 전영호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보

차 례

- ◎ 조 례
 제 1665 호 : 서울특별시도로점용토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 ◎ 규 칙
 제 1990 호 : 서울특별시도로점용토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5
- ◎ 교육위원회 규칙
 제 262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6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308 호 :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및도로) 실시계획인가추가 고시	6
제 309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7
제 31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 변경	8
제 31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설계 변경허가	9
제 312 호 : 육류연동가격고시	9
제 31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및 변경결정	10
제 314 호 :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결정및 지적승인	12
제 31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12
제 31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3
제 31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3
제 318 호 : 사방지정지 해제	14

◎ 공 고

제 35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4
제 35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포장,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16
제 354 호 : 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연장공고	17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2.8.9.

서울특별시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665 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제 40 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법제 80 조의 2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 3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4 항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우수리”를 “단수”로, “전체점용면적”을 “총점용면적”으로 하며, 동조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 년 미만인 때에는 매 1 월을 12 분의 1 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 월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5 일 이하인 때에는 2 분의 1 월로, 15 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 월로 계산한다.

⑥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의 예에 의하되 회계년도 별로 산정한다.

제 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중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점용료”로 한다.

①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 년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 년을 초과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후 3 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물 안날로부터 1 월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 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중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물”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로 한다.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p>자할 경우에는 남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7 조 (권한위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도에 대한 점용허가는 구청장에게 내부귀임한다.</p> <p>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 (점용료의 산정기준) 중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4 호의 구분란중 “주유소” 다음에 “주차장”을 삽입하고 “휴게소” 다음에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출입시설”을 삽입하며 동호의 산정방법란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p> <p>“다만,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각요율의 2배로 산정한다.</p> <p>가. 공사장 출입시설은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정한다.</p> <p>나. 주유소,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수리소, 호텔등의 영업소출입시설은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정한다.</p>	<p>다. 비주거용 건물 및 옥내주차장 출입시설은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정한다.</p> <p>라. 주거용 건물출입시설은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정한다.</p> <p>마. 전 항목에 계기되지 아니한 출입시설은 각 항목에 가장 유사한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p> <p>제 5 호의 구분란중 “주차장”을 삭제하고 산정방법란의 100분의 6을 100분의 8로 한다.</p> <p>제 6 호의 구분란중 “……시설을 위한 점용”을 ……시설을 위한 점용과 지하도 벽면등에 광고목적의 시설을 위한 점용”으로 하고 동호의 산정방법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기존주택에 부설된 지하실로서 당해 지하실의 설치후 도로의 지하로된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p> <p>제 7 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7. 임시 또는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작물, 시설물 및 물품의 적치를 위한 점용</p> <p>제 8 호의 구분란중 “광고물”을 삭제하고 산정방법란중 “간판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p>
---	--

제 10 호의 산정방법란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지하도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면적 또는 표시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의 (비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 1 호의 점용에는 우편함, 공중전화박스류등을 위한 도로점용과 이들의 시설을 위한 공사가 포함되며 전주에는 통신전주를 포함한다.

나. 제 3 호의 점용에는 아취식 공작물, 노상입간판류등을 포함한다.

다. 표시면적이란 광고탑, 광고판, 간판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광고판, 간판은 주된 광고의 1 면만을 산정한다.

라. 제 4 호의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출입시설의 점용면적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부터 대지와 접한 보도 끝까지 (보도폭 전부) 로 한다.

마. 제 7 호의 점용에는 가전물, 진열대, 가설울타리 (비계목포함) 류와 자재적치, 상품적치, 노상작업, 노상상행위등을 포함한다.

바. 제 10 호의 점용에는 지하상점등의 시설과 각종 공작물, 건축물육교 및 식물재배를 위한, 도로점용이 포함되며 주택은 주거용건

물에 한정하여 그 부수시설은 제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남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8. 6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규칙제 1990 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제 2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공공사업등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년한
 제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6조 (이의신청) 점용료 및 부당이
 득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부 칙

-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칙시행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8. 1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구분석 ⑤

◎ 교육규칙제 26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1항 및 제 6항중 “법무
 제”를 “의사법무제”로 한다.

제 3조 제 3항중 제 1호를 삭제하고
 제 2호 내지 제 5호를 제 1호 내지
 제 4호로 한다.

제 3조 제 6항중 제 1호내지 제 5호
 를 제 2호내지 제 6호로 하고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교직원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08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및도로) 실시
 계획인가추가고시

- 1. 건설부고시 제 203 호 (75.12.20)
 건설부고시 제 214 호 (78.8.2) 및
 건설부고시 제 349 호 (79.9.24) 에
 의거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도
 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
 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고시된 서울특별시고시 제 272
 호 (81.7.16) 의 토지 및 건
 물조서 내용중 별첨과 같이 누락
 된 부분을 추가하여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
 12.31)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지하철건설본부 기획
 조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8. 6.

서울특별시장

토지및건물조사 (누락분추가)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관계인주소성명							
마포구염리동	8-25	대	100.5 ㎡	다포구염리동 8-25	강봉규						
·				서대문구아현동 596-228	이해옥						
마포구염리동	8-26	·	101.8 ㎡	마포구염리동 8-15	김기전						
				서대문구북아현동 8-15	김선원						
마포구염리동	8-154	·	2.6 ㎡	마포구염리동 8-15	김기전						
·	8-153	·	2.3 ㎡	· " 8-25	강봉규						
·	8-152	·	7.6 ㎡	· " 8-15	김기전						
·	8-151	·	6.9 ㎡	· " 8-92	김영식						
마포구대흥동	12-210	·	76.2 ㎡	종로구돈의동 103-48	윤태영						
마포구대흥동	12-26	(복조와습)	1층 15평 2층 6평 계 21평	종로구돈의동 103-48	윤태영						
마포구염리동	8-38	·	4 평	마포구염리동 8-92	김영식						
토지및건물조사 (당초및정정)											
당 초					정 정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영등포동	256-29	대	13 ㎡	영등포동 256-29	장성진	영등포동	256-29	대	13 ㎡	영등포동 256-29	상산동은
<p>◎ 서울특별시고시제 309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내버</p>						<p>스여객자동차정류장) 을 도시계획시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521 호(81. 12.31)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 시한다.</p>					

2. 관계도서는 관할 구청 도시정비
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 다.
1982. 8. 10
서울특별시

○ 시설조사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여객자동차정류장	마포구성산동 51-3 일대	683㎡	폐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제3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호(81. 12. 31)의 권
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

정 및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8. 10

서울특별시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6m	250m	동대문구이문동264-49	성북구석관동산 104	
변경	"	2	8	276	" 264-210	" 이문동 398	
"	"	3	6	64	" 264-420	" " 401-5	
신설	"	2	8	120	구로구독산동 산 113	구로구독산동 산 115	
"	"	3	6	85	용산구한강로 3가 40-504	용산구한강로 3가 40-504	
기정	"	1	10	120	강동구암사동 산 48-7	강동구명일동 312-117	위치변경
변경	"	"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311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설계변경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8 호 (81. 3. 11)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 12. 31)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학교) 설계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8. 9.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91-11 외 20 필지
- 나. 사업의종류 및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성보중고등학교
- 다. 사업규모 및 면적
54,704.70 ㎡ (16,548 평)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5
성명 : 윤 장 섭

- 마.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허가일 - 81. 3. 11
준공예정일 - 84. 2. 28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사. 토지의 소유자와 수용법 제 4 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 아. 변경허가설계도서 - 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 312호

육류연동가격고시

육류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8. 12

서울특별시장 김 선 태

- 1. 육류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 그램당)
1,950 원
- 2. 시행일
1982. 8. 16 부터

<p>○ 서울특별시고시제 313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p> <p>1.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건설부 고시 제 521호(81. 12. 31)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p>		<p>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8. 12 서울특별시장</p>					
<p>가.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서</p>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송곡여중교)	동대문구망우동 252-1 일대	14,169	기존학교			
"	" (영란여중교)	동대문구망우동 220 일대	35,452.4	"			
"	" (동성중교)	종로구혜화동 90-7 일대	22,676.7	"			
"	" (동덕여중교)	종로구창신동 225-2 일대	18,680.1	"			
"	"	강서구신월동 169-4 일대	11,524				
"	"	서대문구홍제동산 4-8 일대	17,598				
"	" (웅암국교분교)	은평구웅암동 334-12 일대	5,463				
기정	" (신양국교)	성동구자양동 506 일대	14,520				
변경	" (신양국교)	" " 506-1 일대	13,790	(감) 730 ㎡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p>							
<p>나. 도시계획시설(도로)조서</p>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6	397	동대문구망우동 251	동대문구망우동 244-25	
변경	"	"	"	"	"	"	폐지
기정	"	"	"	120	강서구신월동 197-1	강서구신월동 198-2	
변경	"	"	"	"	"	"	폐지
기정	"	"	"	100	강서구신월동 169-5	강서구신월동 169-1	
변경	"	"	"	"	"	"	폐지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80	강서구신월동 168-6	강서구신월동 198-1	
변경	"	"	"	"	"	"	폐지
기정	"	"	4	20	강서구신월동 170-16	강서구신월동 170-16	
변경	"	"	"	"	"	"	폐지
신설	"	"	6	60	강서구신월동 198-1	강서구신월동 198-2	
기정	"	2	8	146	성동구자양동 553-266	성동구자양동 504	
변경	"	"	"	"	"	"	폐지
신설	"	"	"	"	성동구자양동 553-475	성동구자양동 504-2	
기정	"	1	10	65	마포구성산동산 11-30	마포구성산동산 11-49	
변경	"	"	"	"	"	"	당초폐지
기정	"	2	8	"	마포구성산동 588-1	마포구성산동 588-5	
변경	"	"	"	"	"	"	점점폐지
기정	"	"	"	150	마포구성산동산 11-29	마포구성산동산 11-30	
변경	"	"	"	"	"	"	당초폐지
기정	"	3	6	"	마포구성산동 587-9	마포구성산동 588-1	
변경	"	"	"	"	"	"	점점폐지
기정	"	2	8	95	마포구성산동산 11-30	마포구성산동산 11-30	
변경	"	"	"	"	"	"	당초폐지
기정	"	3	6	"	마포구성산동 588-3	마포구성산동 588-3	
변경	"	"	"	"	"	"	점점폐지
기정	"	2	8	76	마포구성산동산 11-49	마포구성산동산 11-49	
변경	"	"	"	"	"	"	당초폐지
기정	"	3	6	76	마포구성산동 588-5	마포구성산동 588-5	
변경	"	"	"	"	"	"	점점폐지
기정	"	2	8	20	마포구성산동산 11-30	마포구성산동산 11-30	
변경	"	"	"	"	"	"	당초폐지

구분	등급	종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점	소로	3	6	20	마포구성산동 588-3	마포구성산동 588-3	
변경	·	·	·	·	·	·	정정대지
신설	·	2	8	70	마포구성산동 산 11-29	마포구성산동 산 11-30	당초신설
신설	·	3	6	50	마포구성산동 587	마포구성산동 587-7	정정신설

· 별첨도면포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14 호

도시계획시설(도서관)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서관)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81. 12.31)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8. 12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서관)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도서관	강남구반포동 511 일대	7,719(㎡)	

나. 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1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1 호 ('82. 1. 23)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1982. 8. 13

서울특별시장

지 작 승 인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종로	3	20	12	1.030	이태원동	보 광 동	동빙교동 7 번지일대
변경	"	"	"	"	"	"	"	150 m 위치변경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1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65 호 (81.10.8) 로 사업시행 허가된 상명여자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증축사업에 대하여 공기연장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521 호 (81.12.31)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변경(공기연장)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8.13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종로구 홍지동 70 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상명여자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 교사 증축
다. 사업규모 및 면적

- 토지면적: 4,625 m²
- 건축기획: 건축면적: 877.32 m²
(연면적: 2,946.94 m²)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7 번지 학교법인 상명학원이사장 배 상 명

마. 사업기간
변경전: 81.10.3-82.7.30
변경후: 81.10.8-83.2.28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설제도면: 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1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06 호 (81.6.4) 로 사업시행 허가된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대하여 허가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521 호 (81.12.31)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8.13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서울종로구 경향동 216-1.21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증축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대지면적 : 변경전 17,620 m ² 변경후 17,620 m ² 2) 증축면적 : 변경전 3,711.65 m ² 변경후 4,000.01 m ² 3) 연 면 적 : 변경전 10,796.099m ² 변경후 11,084.459m ² 4) 층 수 : 변경전 지하 1 , 지상 6 변경후 지하 1 , 지상 7 (내부계단 및 옥탑 (물탱크) 증축)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중구정동 32 번지 학교법인이화학원대표 신 봉 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전 : 81.6.4-82.6.30 변경후 : 81.6.4-82.9.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유 . 재지, 지번, 지복 및 소유권 이의 의 권리명세 : 종전과 동일 사. 공사설제도면 : 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18 호 사방지정지해제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하 였기 동법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	1982.8.13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tr> <th>구</th> <th>동</th> <th>해제지번</th> <th>해제면적</th> </tr> <tr> <td>동대문구면목동</td> <td></td> <td>산30</td> <td>3,858 m²</td> </tr> </table>	구	동	해제지번	해제면적	동대문구면목동		산30	3,858 m ²
	구	동	해제지번	해제면적					
동대문구면목동		산30	3,858 m ²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공 고 </div> <p>◎서울특별시공고제 35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30 호 (82.1.23)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고시 및 서 울시 고시 제 169 호 (82.4.27) 로 지 적승인된 성북 2 동 224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건물 및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공 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 람하며</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 치하고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8.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략 개 요</p> <p>가. 사업장의 위치 : 성북구 성북 2 동 224 주변</p> <p>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성북 2 동 224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p> <p>다. 사업의 규모 : B=8 L=290</p> <p>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82.11.30</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p> <p>사.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p>
---	---

공 사 건 물 가 격 조 서

번호	소재지	지 목	수용면적	산술평균치	사 정		소 유 자		비고
					단가	금액	주 소	성 명	
1	성북동 212-6	목조와즙주택	2.9㎡				성북동 212-6	최원학	
2	" 212-7	"	32.2㎡				" 212-7	김소환	
3	" 212-7	"	19.9㎡				" 217-7	윤광수	
		"	31.4㎡					외 1	
4	" 217-14	목조 와 즙 경가전주택	14㎡				" 217-14	한순석	
5	" 217-15	"	26.4㎡				" 217-15	장우현	
6	" 217-19	목조와즙주택	5㎡				" 217-19	최경덕	
7	" 217-27	세 멘 벽 돌 평옥개주택	7㎡				" 217-27	이성용	
8	" 217-28	목조도단즙 주 택	23.1㎡				" 217-28	강대식	
		목조초즙주택	36㎡					외 1	
9	" 217-29	목조도단즙주택	5㎡				" 217-29	최낙석	
10	" 217-37	목조초즙주택	22㎡				" 217-37	이계봉	
11	" 217-84	목조와즙주택	7㎡				" 217-84	김춘승길	
12	" 217-47	목조세 멘 와 즙 주 택	20㎡				" 217-47	양장수	
13	" 217-46	목조초즙주택	10㎡				" 217-46	김성길	
14	" 217-45	목조와즙주택	13㎡				" 217-45	민재덕	

◎서울특별시공고제 35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포장,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3호(1969.1.18)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공사 구간내에 적속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을 수립코져 도시계획법제 25 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2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의 시행지 : 서대문구 남가좌 1동 289번지주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로포장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 B = 6 m, L = 134 m
 A = 8 ㉔ → ㉔
 하수도 : n = 450 mm, L = 130 m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82년8월 22 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 번	지 목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남가좌 1동 268-1	대	99	4	좌 동	김봉업
" 268-1	건물	59	1	"	
" 268-9	"	17	13	명륜동 3가 2-12	노진원
" 268-3	"	50	30	마포구창전동 6-125	양영석
271-1	"	66	22	좌 동	최정식
273-13	도로	354	18	노고산동 31-50	허 판
273-2	대	20	20	상천동 100-98	안경학
289-72	"	437	437	국 유 지	
289-1	"	2,555	2	기부채납	
288-4	전	195	195	"	

<p>7. 보상계획</p> <p>가. 대상전물 : 별첨 토지조서 내역</p> <p>나. 보상시기 : 82.8.22-82.9.30</p> <p>다. 보상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평가, 금액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이내 협의취득 ○ 협의불성시 토지수용법제25조의2 및 동법77조에 의거 강제수용 <p>라. 보상지급방법 : 계약과 동시 보상금 전액지급</p> <p>8. 관계도면 : 별첨</p>	<p align="center">◎서울특별시공고제 354 호</p> <p align="center">임용후보자명 부유효기간연장공고</p> <p>1980.7.6시행한 서울특별시제 3회 7급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다음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얏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align="right">1982.8.10</p> <p align="center">서울특별시정 김성덕</p> <p>1. 연장기간 : 82.8.13-83.8.12</p> <p>2. 대상자명단 (4명)</p>
--	---

연 번	임용예정직렬	계 급	등록번호	성 명	비 고
1	화 공	7 급	26	정운교	
2	"	"	27	박철우	
3	"	"	28	이형철	
4	"	"	29	김제순	

사 령

◎ 1982년 8월 9일자 형제 121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강석원	종합민원실	용산구민원봉사실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완	"	구로구 "	"
박용부	"	" "	"
박만길	"	동작구 "	"
정성웅	"	교통국관광과	"
박계웅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강남구세무1과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전철휴	도시계획국 기획정리과	용산구세무1과	지방행정주사보
전락수	" "	서울운동장	"
김복두	" "	은명구수도관리과	지방행정서기
이영복	" "	성동구금호4가동	"
이복동	" "	동대문구신내동	"
오익필	내무국 행정과	보건사회국부녀청소년과	주사
박필수	" "	" "	지방행정주사보
최병무	동부병원	남부부녀보호지도소	"

령제 42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영락	운수2과 파견근무를 명함. (82.8.9 - 82.12.31)	도봉구도시정비과	지방행정주사보
백의웅	" "	은명구	"
김진섭	" "	동작구	"
배종일	" "	관악구	"
박문규	운수2과 (교통종합민원신고 센터) 파견근무(82.8.9-82.12.31)	종로구위생과	"
김성한	" "	성동구세무1과	"
전하철	(82.8.12-82.12.31)	동대문구신설동	지방행정서기
이평신	(82.8.24-82.12.31)	성동구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령제 42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유재근	기획관리실	민방위국비상계획과	지방행정주사보
문재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기획관리실	주사
최성남	중구	시정개발담당관	"
하설수	종로구	성북구중앙1동	주사보
		서대문구남가좌1동	서기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신 정 수</p> <p>서울특별시 도봉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조 석</p> <p>서울특별시 은평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장 의 성</p> <p>서울특별시 중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나 증 성</p> <p>서울특별시 강서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조 인 강</p> <p>서울특별시 중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이 우 철</p> <p>서울특별시 관악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윤 여 권</p> <p>서울특별시 강서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이 상 익</p> <p>서울특별시 성북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김 용 환</p> <p>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김 동 선</p> <p>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최 병 록</p> <p>서울특별시 관악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차 재 명</p> <p>서울특별시 용산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모 철 민</p> <p>서울특별시 성동구 파견근무를 명함.</p>	<p>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박 종 록</p> <p>서울특별시 구로구 파견근무를 명함.</p>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김 차 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파견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김 기 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파견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이 영 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파견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김 기 춘 서울특별시 마포구 파견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오 정 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파견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김 재 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파견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남 경 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파견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조 원 웅 서울특별시 동작구 파견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장 욱 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파견근무를 명함.
--	--

◎ 1982년 8월 16일자

령제 43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한 강 호	업무과 (부정급수단속전담요원) 파견근무를 명함. (82.8.15-82.12.31)	종로구무악동	지방행정서기보
최 성 훈	"	중구남대문5가동	"
유 창 원	"	성동구하왕십리1동	"
차 치 경	"	성북구안암동	"
이 시 문	"	강서구신월1동	"
김 중 하	"	구로구신도림동	"
전 성 식	"	영등포구당산1동	"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윤 중 호	업무과 (부정급수단속전담요원) 파견근무를 명함. (82.8.16-82.12.31)	판악구봉천 5동	지방행정서기보
김 정 수	"	강남구서초 1 동	"
백 재 인	"	강동구암사 1 동	"
오 정 구	"	동부병원	"

© 1982년 8월 14일자 령제 433 호	령제 434 호
강남구 산업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박 재 인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	비상계회과 지방행정주사 신 용 철 부직을 명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